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657
----------	-------

제출연월일 : 2025. 9. 3.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증권시장을”을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연 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연재산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를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연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제4호 중 “출연재산의”를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생 략)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 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u>상속인</u> <u>과 그 직계비속이</u> 있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u>상속인 및 직계비속이</u>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생 략)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상속인,</u> <u>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u> <u>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u> <u>우자가</u> ----- <u>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u> <u>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u> <u>속의 배우자가</u>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 ② (생 략)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 세법」 <u>제101조제1항(같은 법</u> <u>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u> <u>우를 포함한다)</u> 이 적용되지 아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제101조제1항</u> ----- ----- -----

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② (생략)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④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
율”이라 한다-----

있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계산식 생략)

② ~ ⑥ (생략)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

받은 것으로 본다.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paper is otherwise blank, with no text or other markings.

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
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
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
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
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

이 조에서 같다]-----
 -----.

 -----.

2.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

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
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
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3.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
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
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
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
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

-----.

-----.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7. -----
----- 출연받
은 재산의 가액-----

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가. 나. (생략)

8.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④ ~ ⑩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③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
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⑫ ~ ⑭ (생략)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⑪ -----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
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
받은 재산-----

-----.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

② -----

-----.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 받은 재산-----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출연재산의</u> 운용소득 사용명세 5.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u>출연받은 재산</u>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48조제2항제3호에</u> 따른 -- --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 ----- <u>제48조제2항제1호에</u> 따른 <u>출연받은 재산</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288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	-	-	-	-	-	-
수입	○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3의2)	32	64	64	64	64	288	58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 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44)		추	정	곤	란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48)		추	정	곤	란		
	소 계(B)	32	64	64	64	64	288	58
총 비용(A-B)		△32	△64	△64	△64	△64	△288	△5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함에 따라 세수증 발생
2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경쟁매매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시 배우자등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배제함에 따라 세수감 발생
3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범위를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운용소득·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일체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증 발생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	-
2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x	적용대상이 되는 다자간매매채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규모등 합리적 추정 불가
3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x	사후관리 범위 확대로 인하여 늘어나는 출연재산 규모를 합리적 추정 불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 25.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①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3의2)

○ 세수증: +288억원

-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시 상속세가 면제되는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세액(A)에서 현행 제도상 납부의무자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한 세액(B)를 차감한 만큼 세수증 발생(연간 64억원)

- 상속세 면제세액(A): 71억원, 면제분 납부세액(B): 7억원

* 7월~12월 상속개시분은 차년도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여, 2026년에는 연간 세수효과의 50% 발생

② 다자간매매채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44)

○ 세수감: 추정곤란

- 적용대상이 되는 다자간매매채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규모등 합리적 추정 불가

③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48)

○ 세수증: 추정곤란

- 사후관리 범위 확대로 인하여 늘어나는 출연재산 규모를 합리적 추정 불가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이희범	이원준	이영주	김병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희범	044-215-4316	lhb1992@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타						
○						
<합 계>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이희범	이원준	이영주	김병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희범	044-215-4316	lhb1992@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